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 2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 21. 최은하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 2021. 1. 21.
- 다. 상정일자 :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 1.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필레 의원

가. 제안이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복지·안전 등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2) 의원정수 및 선출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 3) 의장단 구성(안 제8조)
- 4)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5) 의원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

6) 제안된 의견 구정에 반영(안 제17조)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제정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 등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그 논의된 사항을 구의원이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등을 정의하였고, 특히 어린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고, 청소년은 만13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1} 관련법상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관 련 법	연령기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민 법	(미성년자) 18세 이하

-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회 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수는 각각 50명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비율을 고려하였으며, 학교대표와 지역대표의 의원수도 1/2로 하여 학교대표와 지역대표간의 형평성도 유지되도록 정함.
 -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 회의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는 1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에 의원이 됨.
 -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의원증, 배지, 견학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고,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68개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 중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표 2}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현황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성격
1	도봉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2018.4.5.	상시
2	성북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2012.12.31.	상시
3	양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2019.3.21.	일회성
4	강동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2016.9.28.	상시
5	동작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2017.11.9.	상시
6	동대문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2019.7.11.	일회성
7	서대문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2020.10.14	상시
8	영등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2018.3.29.	체험
9	마포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2019.3.28.	체험
10	종로	청소년의회 체험활동 운영	2019.3.15.	체험
11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2017.9.21.	체험

※ 우리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의회를 체험하는 조례임.

○ 검토의견

- 유럽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이미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청소년 정책과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나 수단으로 논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정치교육과 청소년 정책의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음. 국회의 “어린이 국회”나 “청소년 국회”, 서울시의 “어린이 의회”, NGO성격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¹⁾”등이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일 의정 체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1)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 (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 그러나 점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정관청과 교육청의 정책을 바꾸기도 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²⁾
- 우리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³⁾ 조성, 교육혁신지구 사업등과 연계하여,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2)한겨레(2019.5.27.) “청소년의회가 학교·사회 바꾼다”

- 가평학생의회가 가평군의회에 제안한 ‘보행로 안전 개선 방안’이 채택되어 주요 통학로 바닥에 로고젝터 설치
- 광명학생교육의회의 ‘학교 시설 설치 및 준공 때 학생 의견 수렴’ 제안이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으로 채택 등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제1원칙은 **아동의 참여**. 지방정부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들은 아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음.